특정감사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- 시설공사 하자관련 특정감사 -

2020. 10.

경상북도
GYEONGSANGBUK-DO

1. 처분요구사항 일람표

(단위 : 천원, 명)

일련번호	소 관	건 명	처 분 요 구		
			처분종류	재 정 상 조치금액	신 분 상 조치인원
1	청도군 @@@과	◒◒◒ △△△△△△ 조성사업 하자 미 조치	시정		훈계1

2.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

연번	제 목	관 련 자			문 책	비 고
		소 속	직위(직급)	성 명		
1	◒◒◒ △△△△△△ 조성사업 하자 미 조치	청도군 @@@과			훈계	

3. 처분요구일람표

1) ◒◒◒ △△△△△△ 조성사업 하자 미 조치 (시정) ····· 2

일련번호	1	감사자	시설7급 성우삼		공개(○), 비공개( )
신분상 조치인원		재정상 조치방법		재정상 조치금액	
수감부서(처리부서)	청도군 @@@과	처분요구일자		회신기일	

경 상 북 도

시 정 요 구

제 목 ◒◒◒ △△△△△△ **조성사업 하자 미 조치**

소 관 청 청도군

관 계 부 서 @@@과

내 용

청도군 @@@과에서는 '◒◒◒ △△△△△△ 건립공사'를 2017년 10월 19일 ㈜$$$$ 대표이사 @@@와 계약하여 2019년 10월 18일 완료하였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,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내구성 및 사용성, 안전성 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시설물을 관리하여야한다.

또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 제13장 제10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

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,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
따라서 청도군 @@@과에서는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견 시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에게 하자보수요청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.

그런데도 청도군 @@@과에서는 2020년 7월 24일 '◒◒◒ △△△△△△ 건립공사' 2020년 하반기 하자검사를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'이상 없음'으로 결과처리하였으나,

2020년 9월 14일 감사 기간 중 현장 확인결과 아래[사진]와 같이 주차장 침하 균열, 옥상누수발생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[사진] 현장확인현황

		
주차장 침하 균열	누수로 인한 오염	조경수 고사

조치할 사항 **청도군수는**

①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만

전을 기하기 바라고

② 또한, 시설물 관리업무 전반적 사항에 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,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,

③ 관련자는 「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